

문서번호 대의협 제0715 - 04268호

시행일자 2026. 7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관련 협조요청(보건복지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-2587(2026.6.25.)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동 법 시행령 등이 개정('26.5.12.)되었으며 이에,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

○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(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)을 수행할 수 있음.

1.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
2. 수술,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

나.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

○ 「아동복지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 수행 자격 여부는 「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하는 [별지 2] 및 [별지 4] 서식으로 확인 가능.

※ 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